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60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압류금지 재산 중 채납자의 재산의 개념 명확화(오기형의원안)	3

I. 개요

1.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60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기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8.

(3) 회 부 일 : 2025. 3.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이 법에 따른 국세채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채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 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채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채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8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압류금지 재산 중 채납자의 재산의 개념 명확화(오기형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압류금지 재산(제41조) ○ 채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등 ○ <u>채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 압류금지 재산 중 채납자의 재산 개념의 명확화 ○ (현행과 같음) ○ 「<u>민사집행법</u>」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u>채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 부 칙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오기형의원안 2025. 2. 28. 발의(의안번호 8605)

☐ 개정안은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생계비계좌’와 연계하여 국세징수 절차에서도 해당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납자의 최소한의 생계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민사집행법」¹⁾에서는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1)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는 국가(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를 압류라 하며, 채권과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금지시키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시키는 재판을 하는 방법으로 함.

다만, 채권과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니어야 함.

「민사집행법」 제246조²⁾와 개별 법령³⁾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 등으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를 정하고 있음.

나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것은 압류의 취지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방법으로,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현실로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압류가 행해짐. 그 후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며(유체물의 경우 매각하여 대금 취득, 재산권의 경우 추심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 현금화된 것은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만족을 얻게됨(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순위에 따른 배당절차가 필요함).

2)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등이 있음.

특히,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 금지되며, 이미 동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압류가 금지되고 있음.

즉,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의 합계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이는 1월간 생계비로 간주되어 압류할 수 없으며, 해당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된 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예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록 그 금원이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예금채권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⁴⁾

또한,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시⁵⁾하고 있어, 채무자

4)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확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는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등을 통해 해당 예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회는 「민사집행법」을 개정(2025.1.31.)⁶⁾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동 개정 법률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⁷⁾에서는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6)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2026.2.1. 시행예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7)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이 하는 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등 절대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히, 동법 제41조제18호 및 동법 시행령⁸⁾에서 채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징수법」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 및 제3

-
5. 채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일기 등 채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채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 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疾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채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채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항9)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더라도 압류금지 재산으로 볼 수 없고, 또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보조금 등이 은행계좌로 입금되면 금융채권이 되어 압류처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은 채납금, 연체금 등의 회수를 위해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실제 저소득 소외계층 국민의 생계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는 「민사집행법」이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금 등 압류금지채권의 성격에 따라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는 반면,¹⁰⁾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 재산은 ‘생계 유지 목적’을 매번 확인하기 어려워 법령상 정해진 250만원 미만 예금을 최소한의 생계비로 간주하여 금액 기준으로 채납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임.¹¹⁾

이처럼 「국세징수법」에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9)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10)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규정하고 있고, 제8호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따라 금액 기준으로 규정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1) 「민사집행법」은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은 국가가 국세 채납자의 재산을 강제징수할 때 채납자의 생계유지를 고려하여 채납처분 시점에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처럼 기준 금액이 서로 다른 것은 각 법령의 주체(사인 또는 국가), 목적(사적 권리 실현 또는 공적 재정 확보),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다르게 작용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동일한 채무자라 하더라도 어떤 절차에서 압류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보호받는 예금 금액의 범위는 다름.

일정 금액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의 개념을 「국세징수법」에 반영할 경우 채납자는 자신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를 지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임.

이에 개정안은 ‘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라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채납자의 기본적 생계보장을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생계비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이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보호하는 250만원 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동일한 생계비 보호 취지에 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저하될 수 있음.¹²⁾

만약, 채납자가 생계비계좌만 있다는 가정하에 압류금지생계비가 「국세징수법」상 보호금액인 250만원 미만보다 낮거나 같은 금액

12) 생계비 계좌에 대해 185만원의 압류금지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국세 채납 징수 시에도 해당 금액은 보호되며, 민사집행법 및 국세징수법상 한도차액 65만원은 일반 계좌에서 보호되어, 결과적으로 총 250만원까지는 각각 생계비 계좌(185만원)와 일반 계좌(65만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효과가 있음.

으로 설정될 경우, 별도의 생계비계좌 제도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이미 동법의 압류금지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이 보호받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특정 계좌를 지정하여 생계유지 목적의 자금을 보호하는 제한적이고 명확한 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은 금융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250만원 미만이라는 금액기준만으로 보호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두 법률 간 적용방식과 보호범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에서 비롯됨.

□ 참고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를 현행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5년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확화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현재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250만원 미만)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한도와 생계비계좌의 예금 한도가 달라 구체적 집행 절차 등을 관계기관과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47
